|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 | (장기동, 뉴고려병원) | |
|--|--|------------|
| 뉴고려병원 10086 | 1661-7779 | |
| | | |
| | | |
| 수검자 성명 황은주 님 주민등록번호 690916-2****** 김 진 장 소 ☑ 내원 █ 출장 김 진 일 2019.12.17 | 황은주 | 귀 하 _ |
| 72006456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1912170137 |
| 건강검진 종합소견 | | |
| | □ 정상B(경계) □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u>(확진검사 대상)</u> | □ 유질환자 |
| ◆ 황은주 님은 일반건강검 | [진 그외, 우울증, 생활습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 |
| | 결과지와 처방전을 참고하십시오. 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
| ▷ 의심 질환 : | |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받을 단,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 질환의심자가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한 수 있도록 최초 1회 진료비 지원(검사기간은 다음연도 1.31.7 1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 |
| ▷ 유질환 : 해당사항없음 | | |
| ▷ 생활습관 관리 신체활동량이 부족합니다. 운동 하여 근력 운동을 수행하십시오 | 을 생활화하십시오. 일주일에 2일 이상 신체 각 ^및 | 부위를 모두 포함 |
| ▷ 기타 정상입니다. | | |

◈혈액검사 결과는 검진기관별로 검사방법 등에 따라 점상A, 점상B, 질환의심 기준 수치가 다른 수 있습니다.

| 구분 | 목표질횐 | ŀ | 검사항목 | | | | 결고 | 나 (참고치) | |
|-------------|-------------------------|----------------|---------------------------------------|------|---------------------|-------------------|--------------------|--|--|
| | | | 키 (cm) 및 몸무게 (kg) | | | | 162.5 | / 62.8 | |
| 계 | 비만/복부비 | l만 | 체질량지수 (kṣ/జ²) | | □ 저체: (18.5미만 | | ■ 정 (18.5-24. | | |
| 측 | | | 허리둘레 (c重) | | 78.0 | | ■ 정 | 상 및 복부 비만(남 90이상, 역 85이상) | |
| _ - 검 | 시각이싱 | <u> </u> | 시력(좌우) | 0. | 7 / 0. | 5 | ㅁ교 | 정 | |
| 사 | 청각이싱 | <u> </u> | 청력(좌우) | 정선 | 상 / 정 | 상 | | ■ 정상 □ 질환의심 | |
| . 1 | 고혈압 (수축기/이왼 | 건) | 91 / 67 mmHg | |] 고혈압 전단계 | (수축 | | 9또는 이완기 80-89) | |
| | 빈혈 등 | | 혈색소(#/dL) | | 12.7 | | 13-16.5 12-15.5 | ■ 정상 □ 기타 □ 빈혈의심 | |
| | 당뇨병 | | 공복혈당(mş/dL) | | 98 | 1 | 00미만 | ■ 정상 □ 유질환자 □ 공복혈당장애 의심 □ 당뇨병 의심 | |
| | | | 총콜레스테롣(ஊ;/dL) | | 비해당 | 2 | 00미만 | □ 정상 | |
| 혈 | ^1 사 기 지 형 | | 고밀도 콜레스테롣(== | /dL) | 비해당 | ε | 60이상 | □ 고콜레스테롣혈증 의심 □ 고증성기반형증 이사 | |
| _ _ 액 | 이상지질혈 | 0 | 중성지방(¤#/dL) | | 비해당 | 1 | 50미만 | · □ 고중성지방혈증 의심 □ 낮은 HDL 콜레스테롤 의심 | |
| 검 | | | 저밀도 콜레스테롣(▫♬ | /dL) | 비해당 | 1 | 30미만 | □ 유질환자 | |
| - 사 | ,1 71 71 * 1 | ı | 혈청 크레아티닌(ms/dL) | | 0.66 | 1 | .2이하 | ■ 정상 | |
| ^r | 신장질환 | | 신사구체여과율 (e-GFR) | | 100 | 6 | 50이상 | □ 신장기능 이상 의심 | |
| | | | AST(SGOT)(IU/L) | | 18 | 4 | 10이하 | | |
| | | | ALT(SGPT)(IU/L) 감마지티피(yGTP)(IU/L) | | 19 | 3 | 35이하 | ■ 정상 | |
| | | | | | 21 | | 63이하 35이하 | ↑ □ 간기능 이상 의심 | |
| 요검사 | 요단백 | | ■ 정상 | | □ 경계 | | | □ 단백뇨 의심 | |
| 영상 검사 | 흉부촬영 | | ■ 정상 □ 비활동성 | 를 폐 | 결핵 🗆 질환의 | 심: | | □ 기타: | |
| 진 찰 | 과거병력 | | 무 | | | 9 | ·부물 치료 | 무 | |
| 설 (문진) | 생활습관 | <u> </u> | □ 금연 필요 *담당 의사와 상담하 | | □ 절주 필요 l오, | ■ 신체활동 필요 ■ 근력운동필 | | | |
| | | | 대상여부 | | | | | 결과 | |
| | | | | | 표면항원 | | □ 일반 | □ 정밀 () | |
| Bē | 간염 | Πį | 해당 ■비해당 | | 표면항체 □일반 □정 | | | □ 정밀 () | |
| | | | | | 항체 있음 [|] 항체 | 에 없음 | □ B형 간염 보유자 의심 □ 판정보류 | |
| 우 | 울증 | ∎ō | 해당 □비해당 | | 우울증상이 없 중간 정도 우울 | | | □ 가벼운 우울증상 (5~9점) 점) □ 심한 우울증 의심 (20~27점) | |
| 인지: | 기능장애 | □ [†] | 해당 ■비해당 | | 특이소견 없음 인지기능 저하 | | |) | |
| 골밀도검사 □해당 | | 해당 ■비해당 | | | | _ 정상 | | | |
| 노인신: | 체기능검사 | | 해당 ■비해당 | | 정상 | | 신체기능/ | 저하 | |
| | | | | | 낙상 | | □정상 | □ 낙상 고위험자 | |
| | | | | 일 | | · 력 | □ 정상 | □ 일상생활 도움 필요 | |
| ı | 기능평가 문진) | □ t | 해당 ■비해당 | | 예방접종 | | □폐렴극 | 루엔자 접종 필요 구균 접종 필요 필요 없음 | |
| | | | | | 배뇨장애 | | □ 정상 | □ 배뇨장애 의심 |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심뇌혈관질환은 뇌졸중,심근경색을 포괄하는 질환을 뜻합니다.

성명 황은주 성별 여자 연령 50 **검진일자** 2019.12.17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나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향후 10년 이내에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확률 심뇌혈관 나이 50세 여자 평균 대비) 황은주님 1.5% 50세 여자평균 2.2% $0.7 \, \mathrm{m}$ 47 M 20 40 80 100

건강관련요인 알아보기

| 건강관련요인 | | 현재 상태 → | 목표 상태 | 건강신호등 |
|------------|------------|------------------|--------------------|-------|
| * | 체중 허리둘레 | 62.8kg 78.0cm | 60kg 미만 85cm 미만 | रूव |
| * | 신체활동 | 주 2회 | 주 5회 이상 | 의힘 |
| | 음주 | 비음주 | 비음주 | 안선 |
| • | 혈압 | 91/67 | 120/80 미만 | 안선 |
| (S) | 흡연 | 비흡연 | 비흡연 | 안진 |
| €, | 공복혈당 | 98 | 100 미만 | 안선 |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위 결과는 황은주 님의 문진표와 검사결과를 토대로 현재상태와 목표치를 제시한 것입니다. 건강신호등에서 '주의'또는 '위험' 에해당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경우에는 혈압,공복혈당,콜레스테롤이 목표치로 조절되고 있어도 '주의'로 표시되며,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하시 기 바랍니다.

※ 위 목표 상태는 일반적인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개인의 건강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건강관련요인을 개선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현재 상태 대비

심뇌혈관 나이

20% 감소 (1.5% 1.2%

44 _M

귀하의 건강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검진의사 : 면허(자격)번호 **판정일** 2019.12.27

48559

안형숙 성명



10086

1661-7779

황은주 귀하

_

| 72006456 | 생활(| 습관평가 결과통보시 | 황은주님 1912170137 |
|----------|-------------------|---|---|
| 수검자성명 | 황은주 | 주민등록번호 | 690916-2***** |
| 검진일 | 2019.12.17 | 검진장소 | ■ 내원 □ 출장 |
| | | 과거 흡연자 □ 현재 흡연 □ 낮음(0-3점) □ 중긴 | 면자 □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 [(4-6점) □ 높음(7-10점) |
| | | ☐ 유 ■ 무 | |
| 흡연 | 처방 [| □ 상담 및 교육 □ 약물치료(니코틴 대체 요법 □ 연계 (금연 단체, 금연 클; | |
| | □ 비음주자 □ 3 | 넥정음주자 □ 위험 음격 | 주자 🗆 알코올 사용장애 의심 |
| 0 7 | 금주/절주 처방전 [| □유 ■무 | |
| 음주 | 7 1 H} | □ 상담 및 교육 □ 약물 치료 □ 연계 | (금주 단체, 금주 클리닉) |
| | I | □ 기본 신체활동 □ 근력운동적절 | □ 건강증진 신체활동 |
| | 운동 처방전 | ■유 □무 | |
| 운동 | l . | 르게 걷기 수영 ⁻ 력 운동 기타 (| 등산 □ 에어로빅 □스트레칭) |
| | | | 분 이상 □ 기타 () 5회 이상 |
| | ■ 양호 | □ 보통 | □ 불량 |
| | 영양 처방전 | ■유 □무 | |
| 영양 | ■ 출 | | □ 단백질류 ■ 야채) □ 단순당 □ 염분 (소금) 사 거르지 않기 □ 골고루 먹기) |
| | □ 정상 체중 | □ 과체중 | □ 비만 |
| | | □유 ■무 | |
| 비만 | □ 음 - | 사량을 줄이십시오 주량과 횟수를 줄이십시오 동 처방을 참고하십시오 타 () | □ 간식과 야식을 줄이십시오 □ 외식이나 패스트푸드를 줄이십시오 □ 연계 (비만 클리닉) |
| | | | |

귀하의 생활습관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판정일 2019.12.17 **검진의사 :** 면허(자격)번호 48559 성명 안형숙

안형숙 서명

뉴고려**등원 (호양**기관기호 31101101)

| 수검자 성명 : 황은주 | | | | | | |
|--|---------------------------------|---|--|--|--|--|
| 1. 귀하의 운동 수준은 ☑ 건강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 건강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건강을 증진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 건강을 증진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 | | | | | |
| 2. 귀하의 건강과 삶의 |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 내 다음과 같은 운동을 권장합니다. | | | | |
| 1) 운동 종류 ☑ 빠르게 걷기 ☐ 수영 ☐ 에어로빅 ☑ 근력운동 | ☑ 걷기 □ 수중운동 □ 댄스 □ 기타: | □ 등산☑ 자전거타기□ 요가 | | | | |
| 2) 운동 시간 □ 10분 | □ 15-30분 ☑ | 30분 이상 🔲 기타 : | | | | |
| 3) 운동 횟수 □ 1주일에 1-2회 | □ 1주일에 3-4회 | | | | | |
| 3. 운동을 통해 호전을 | 기대할 수 있는 귀하 | 의 질병 상태 | | | | |
| □ 비만/과체중 | □ 스트레스 | □ 고혈압 | | | | |
| □ 당뇨병 | □ 심장질횐 | □ 뇌졸중 | | | | |
| □ 이상지질혈증(고기 | 지혈증) 🔲 골다 공 증 | 당 | | | | |
| □ 낙상 | □ 우울증 | □ 기타 : | | | | |
| 4.기타 의견 (100자 이내로 필요시 작성) | | | | | | |
| 검진의사 이름/서명 : | 48559 안형숙 <i>(설)</i> | | | | | |

72006456 1912170137

| 영양 처방전 | | | |
|----------|---|-------|--|
| <u> </u> | · | _ | |

| 수검자 성명 : 황은주 |
|--|
| 1. 현재 귀하의 식생활습관은 ☐ 개선할 점이 많은 상태입니다. ☐ 보통입니다. ☐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양호한 상태입니다. |
| 2. 식생활습관 개선 처방 □ 매일 1컵 이상의 저지방 우유나 요구르트, 또는 칼슘강화두유를 드십시오. □ 매일 3회 이상 끼니마다 조금씩 콩, 두부, 생선, 육류를 드십시오. □ 매끼 1접시 이상의 나물, 쌈, 샐러드를 드십시오. □ 튀김이나 볶음요리보다는 구이, 찜, 무침요리를 드십시오. □ 육류를 드실 때에는 가능하면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닭과 오리의 껍질은 벗기고 드십시오. 장어나 생선 알, 내장도 자주 드시지 마십시오. □ 아이스크림, 과자, 케이크, 음료수와 같은 단순당으로 이루어진 간식은 삼가십시오. □ 국, 찌개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젓갈, 장아찌, 조림 등의 짠 반찬 섭취는 줄이십시오. □ 마침을 거르지 마시고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습관을 들이십시오. □ 편식하지 마시고, 매일 곡류, 고기 및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 등의 식품류를 빠짐없이 골고루 드십시오. □ 가급적이면 외식 횟수를 줄이시고, 외식을 하실 경우에는 너무 짜거나 매운 것, 기름진 것을 피하십시오. |
| 3.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통해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귀하의 질병 상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되졸중 말초혈관질환 골다공증 비만/과체중 등품 기타: 4.기타 의견 (100자 이내로 필요시 작성) |
| 검진의사 이름/서명 :48559 안형숙 (서명) |

※ 이 처방전은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안내하는 처방으로 투약이나 조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086 1661-7779

황은주 귀하

72006456

위암 검진 결과통보서

1912170137

| 성 | 명 | 황은주 | 주민 등록! | 번호 | 690916-2***** | |
|----|---------------------------------------|---|---------------------|---------------------|---------------|--------------|
| 구분 | 검 시 | 나 항 목(검진일) | Ž | 결 과 | 판 | 정 |
| | *위내시경 (20 (병변위치: 위 | 19년 12월 17일) 위전정부 소만) | 관찰소견 : | 위염 | 양성질환 | |
| 위 | | | | | | |
| 암 | | | | | | |
| = | | | 권 고 사 | 항 | ' | |
| | == 수면 위 -표재성 위 -신물역류, 시기 바랍니 | 내시경 == 염 소견입니다. 속쓰림, 상복통, 소화불 다. 향후 정기적인 추적 | 불량 등의 위? 덕검사 하시기 | 장증상이 있을시 바랍니다. | 외래 통해 약처병 |) 받 <u>으</u> |
| | 판정일 | 2019년 12월 26일 | 판정의사 | 면허번호 의 사 명 | 86384 이동현 | (HB) |

- 된 경우 습니다.
- 위암 검진 결과통보서
 (건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상급송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자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 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진료담당의자가 검진결과서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한 경우 동 검진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갈음하여 검진을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의 의료급여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소의 의료급여결자에 따라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위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률 1위로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조기 발견된 경우 내시경적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로 완치 가능한 암입니다. 위암은 40세이상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40세이상 남녀 모두 2년 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장조영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1. 31일까지 위내시경검사를 통해 위암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암검진 결과가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복통, 속쓰럼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검사결과 이상소견없음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경우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위암 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31101101 요양기관기호

2019년 12월 26일

뉴고려병원 검진기관명



10086

1661-7779

황은주 귀하

72006456

대장암 검진 결과통보서

1912170137

| 성 | 명 황은주 주민등록번호 690916-2***** | | | | | | | | |
|----|---|--------------------------------------|--|--|-------------|---------------------------------------|--------------------------------|-------------------------------|-------------------------------|
| 구분 | 검 시 | 나 항 | 목(검진일) | Ę | 결 | 과 | | 판 | 정 |
| | *분변잠혈검사 | (2019년 | 12월 17일) | 검사방법 : 결과: 음성 (수치: 11 ng/ml) | 정량 ng/ml | ,참고치: 100 |) | 잠혈 반응 | 없음 |
| 대 | | | | | | | | | |
| 장 | | | | 7 7 7 | | | | | |
| 함 | * 분변잠혈약 대장에 아무 등)이 있는 감소, 대변 시기 바랍니 | 반응 검/ '런 이성 경우에! 굵기의 I다. | 사 결과 음성(대)이 없을 가능성(도 정상으로 나올 변화, 혈변 등)(| 권 고 사 변에서 혈액(기 높으나 경 · 수 있습니! 기 있으면 의 | | 출되지 않음 따라 대장(]러므로 최: 관을 방문하 | F)입니다 게 병변 근 의심 F시어 (| 다. 이러 (염증, 되는 증 진료상담 | 한 경우 용종, 암 상(체중 을 받으 |
| | 판정일 | 2019 | 9년 12월 27일 | 판정의사 | E ○ | 현번호 사명 | | 103804 청경용 | (郑德) |

- 대성임 임선 실과 등모시 (건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자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 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검진결과서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한 경우 동 검진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갈음하여 검진을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의 의료급여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은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조기 발견된 경우 대시경적 치료 또는 소술제 기료로 악기 가능한 악인니다
- 그 이외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소의 의료급여결자에 따라 신료를 받으셔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은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조기 발견된 경우 내시경적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로 완치 가능한 암입니다. 대장암은 50세이상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50세이상 남녀 모두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받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분변잠혈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1, 31일 까지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통해 대장암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 산정특례자 및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수검자는 대장암검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분변잠혈검사만으로 모든 대장 질환을 판별할 수 없으므로 분변잠혈검사가 음성이라 하더라도 의심되는 증상(체중감소, 대변 굵기의 변화, 혈변 등)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검사 결과 이상소견없음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경우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대장암 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뉴고려병원 검진기관명

2019년 12월 27일

요양기관기호 31101101

10086 1661-7779

황은주 귀하

72006456

유방암 검진 결과통보서

1912170137

| 성 | 명 | 황은주 | 주민 등록! | 번 호 | 690916-2**** | | | |
|----|-----------|---------------|--------|---------------|--------------|--------------|-----|--|
| 구분 | 검 시 | ㅏ 항 목(검진일) | - | 격 글 | 과 | 판 | 정 | |
| | *유방촬영 (20 | 19년 12월 17일) | -판독소견1 | : 이상소견없 | 이상소견없음 | | | |
| 유 | | | | | | | | |
| 방 | | | | | | | | |
| | | | 권 고 사 | 항 | | | | |
| 암 | | | | | | | | |
| | 판정일 | 2019년 12월 23일 | 판정의사 | 면허번호 의 사 명 | | 48559 안형숙 | は関し | |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상급총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자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 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검진결과서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한 경우 동 검진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갈음하여 검진을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의 의료급여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 고 이외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정구에는 '의료급여입 시행규칙] 제 3조의 의료급여결사에 따라 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은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유방암 조기검진을 위해서 40세이상의 여성은 2년에 한 번씩 유방촬영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방암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유방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분과 유두 출혈이 있거나 유방에 몽우리가 만져지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검사결과 이상소견없음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경우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유방암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수검자는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유방암검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유방암 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요양기관기호 31101101

2019년 12월 23일

뉴고려병원 검진기관명

